

일본 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소개

정 지 은/표준화2국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각국간의 시장개방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하는 각국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종래의 표준화는 국제통신망간 또는 사업자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성을 위주로 하여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화 추세를 보면 개발된 기술을 표준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장선점의 무기로 삼는 것이다. 이에따라, 선진국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이제 표준화와 제적재산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표준화를 추진함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취급에 대한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표준화 사항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특허사항은 소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표준화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무상으로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또는 공정타당한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표준화의 추진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준화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나 선진각국의 표준화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및 국제 표준화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표준화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숙고해 볼 시기가 온것 같다.

이에 일본의 전기통신분야 표준화 기관인 '사단법인 전신전화 기술위원회(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공업소유권등에 대한 기본 지침 (TTC)

(사)전신전화기술위원회 (이하 「TTC」라 한다)에서 제정하는 TTC 표준은 공정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TTC 표준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공업소유권등(공업소유권등이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을 말하며 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계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회원의 의지, 또는 전체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정,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TTC는 TTC 표준의 보급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TTC 표준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관계되는 공업소유권등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TTC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공업소유권에 관련된 경우의 취급 기본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더우기 본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TTC 이사장의 자문기관인 「공업소유권등 취급 기본지침등 검토위원회」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다.

1. 취급

TTC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등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권리소유자가 다음 (1) 또는 (2)를 선택하는 경우는 TTC 표준의 대상으로 한다.

(1) 해당권리소유자는 해당 공업소유권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일체 하지 못하고, TTC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무조건으로 공업소유권등의 실시를 허락한다.

(2) 해당권리소유자는 해당권리의 내용, 조건을 명확히 한 후에 TTC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건 하에서 비배타적으로 공업소유권등의 실시를 허락한다.

단, 해당 TTC 표준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해당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되는 공업소유권등의 권리를 소유하고 또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해당권리소유자가 그 사람을 (1) 또는 (2)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도 무방하다.

더우기 TTC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등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책임은 없으며 또한 공업소유권등에 관계되는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절차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등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2.1 확인서의 제출

해당권리소유자는 TTC 표준의 작성에 있어서 공업소유권등에 관계되는 다음 (1), (2) 또는 (3)의 확인서를 TTC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권리소유자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등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공업소유권등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일절하지 않고, TTC 표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으로 공업소유권등의 실시를 허락한다.」라는 뜻의 확인서.

(2) 「해당권리소유자는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업소유권등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권리의 내용, 조건을 명확히 한 후에 TTC 표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조건하에서 비배타적으로 공업소유권등의 실시를 허락한다」라는 뜻의 확인서.

(3) 1항의 취급에서 (1) 또는 (2)에 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소유자는 해당 공업소유권등에 관하여 1항 (1) 또는 (2)에 의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

확인서 제출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TTC 표준화회의 소관 부문위원회에서 해당 TTC 표준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로 한다.

또한 확인서에는 해당하는 공업소유권등의 건명(출원번호/공개번호/공고번호/등록번호) 및 조건등을 부가하는 것으로 한다.

또 공개전의 신고에 관해서는 공개후 다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 권리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2.2 확인서의 보관 및 주의사항 기재

TTC는 해당 권리소유자로부터 2.1항 (1), (2) 또는 (3)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접수했을 때는 문서를 보관하며, 또 2.1항 (1) 또는 (2)를 인정하는 확인서의 경우는 TTC 표준에 아래 내용의 주의사항을 기재한다.

주의 : 본 표준에서는 공업소유권등에 관해 특별한 기술은 하지 않지만 권리소유자는 「해당권리에 대해, XXX의 권리는 YYY가 보유하는 것인데 권리주장을 일체하지 않고, TTC 표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무조건으로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를 허락한다. 단, 해당 TTC 표준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해당 TTC 표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 되는 공업소유권등의 권리를 소유하는 한편, 권리를 주장할 경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혹은

「적절한 조건으로, 그 실시를 허락하는…내용」)표명하고 있다. 등…

2.3 확인서의 미제출에 관계되는 책임

TTC는 해당권리소유자가 2.1항의 확인서 제출을 태만히 했을때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록

「공업소유권등의 실시 권리에 관계되는 확인서」에 대하여

공업소유권등 (공업소유권등이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을 말하며 출원중인 것을 포함한다. 이와같은.) 의 소유자인 회원 (회원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은 그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이 TTC 표준의 작성에 있어서 표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한 공업소유권등에 관계되는 확인서를 사단법인 전신전화기술위원회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확인서 제출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TTC 표준화회의 소관 부문위원회에서 해당 TTC 표준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로 한다.

- 확인서 기술내용 -

- 1. 해당 공업소유권등이 공개후인 경우의 「공업소유권등의 실시 권리에 관계되는 확인서(특허의 경우)」의 기재사항 (특허 이외에 대해서는 이에 준한다.)
 - (1) 확인서 제출년월일
 - (2) 해당하는 표준화의 건명 또는 검토 항목
 - (3) 특허출원인의 성명 또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 (4) 출원의 년월일 및 출원번호/공개번호/공고번호/등록번호

- (5) 발명의 원칙
- (6)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 (7) 다음에 게재되는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

- ① 발명 명칭
- ② 도면의 간단한 설명
-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 ④ 특허 출원의 범위

- (8) 특허의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 실시 권리를 허락 하는데 있어서의 대가등의 조건
- (주) 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권리 소유자는 신속하게 다시한번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해당공업소유권등이 공개전인 경우 「공업소유권 등의 실시 권리에 관계되는 확인서(특허의 경우)」의 기재사항(특허 이외에 대해서는 이에 준한다.)

- (1) 확인서제출 년월일
- (2) 해당하는 표준화의 건명 또는 검토 항목
- (3) 특허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또는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성명
- (4) 출원 년월일 및 출원번호

- (5) 발명 명칭
- (6) 출원중인 권리에 포함되는 TTC 표준으로 규정하는 부분의 명시
- (7) 특허의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 실시 권리를 허락하는데 있어서의 대가등의 조건

(주) 확인서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해당 권리소유자는 신속하게 다시한번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한다.

공업소유권등에 대한 기본지침의 운용세칙

이 운용세칙은 TTC에서 공업소유권* 등에 대한 기본지침의 운용에 있어서의 취급요령을 아래 6 항목으로 나타내었다.

- 신고시기등의 규정
- 신고가 없는 경우의 대처
- 공업소유권등의 조사
- 비회원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의 취급
- 신고 내용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취급
- 공업소유권등 취급 기본지침등 검토위원회(이하 「지침위원회」라한다)의 운영사항

※ : 일본에 있어서의 공업소유권등을 말한다.

(1) 신고 시기등의 규정

신고 시기등의 규정에 관하여, TTC 표준 작성의 절차와 각 단계에서 필요로하는 조치의 기본 사항은 다음에 명시한 바와같다.

더우기 여기에 명시된것 이외에 대해서는 기본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범례]

Ai : 표준안을 작성하는 전문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A)에 관계되는 사항

Bi : 표준안을 작성하는 전문위원회와 동일 부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전문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B)에게 관계되는 사항

Ci : A, B 어느 전문위원회에서도 참가하지 않는 회원(C)에 관계되는 사항

Di : 비회원(D)에 관계되는 사항

지상중계

일본 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소개

TTC 표준 작성 작업의 절차와 각 단계에서 필요로하는 조치

| 회의명 | 진행사항 | 공업소유권등의 소유자 | 표준안을 작성하는 전문위원회에 참가 하는 회원 (A) | 표준안을 작성하는 해당부 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전문위원회 참가 회원 (B) | A, B 어느 전문위원회에 도 참가하지 않는 회원 (C) | 비회원 (D) |
|-------------|--|-------------|-------------------------------|--|---------------------------------|---------|
| 표준화회의 | 표준화과제의 결정 | | | | | |
| ↓ | | | | | | |
| 부문위원회 | 표준화과제에 대한 검토 항목의 선정 | A01 | | B01 | | |
| ↓ | | | | | | |
| 전문위원회 | 검토 항목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 | A02 | | | | |
| | | | ★1 | ★3 | | |
| | | | ↓ | ↓ | | |
| | 표준안의 작성 완료 | A11 | | B31 | | |
| ~ 2 W | | | ★2 | ★4 | | |
| ↓ | | | ↓ | ↓ | | |
| 부문위원회 | 표준안의 심사 및 조정 (표준한 결정) | A12 | A21 | B32 | B41 | |
| ↓ ~ 1 W | | | | | | D01 |
| 조정위원회 | | | | ★5 | | |
| ↓ ~ 2 W | | | | | | |
| 사전설명회 | 표준안을 표준화회의 위원들에게 미리 주지, 설명(표준안 주지, 설명) | A13 | A22 | A33 | B42 | B51 |
| | [표준안에 대한 의견, 대안 접수] | | | | | |
| ↓ 2 W | | | | | ★6 | ★7 |
| 전문위원회 | 의견, 대안 대처안의 작성 | | | | ↓ | ↓ |
| ↓ 1 ~ 2 W | | | | | B61 | C71 |
| ↓ | | | | | ↓ | ↓ |
| 부문위원회 | 의견, 대안 대처안의 심사 | | | | B62 | C72 |
| ↓ ~ 1 W | | | | | ↓ | ↓ |
| 조정위원회 | | | | | B63 | C73 |
| ↓ ~ 3 W | | | | | ↓ | ↓ |
| 표준화회의 | TTC 표준 작성 | | | | B64 | C74 |
| ↓ 5 ~ 6 W | | | | | ↓ | ↓ |
| 이사회 | 표준 작성을 보고 | | | | B65 | C75 |
| ↓ | | | | | | |
| 평의회 | 작성 절차 심사 | | | | | |
| ↓ | | | | | | |
| [TTC 표준 발효] | | | | | | |

★ : 확인서 제출

지상중계

일본 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소개

A. 표준안을 작성하는 전문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 (A) 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에 대하여

A01 : 부문위원회에서 표준과제에 대한 검토항목 (이하, 「검토항목」이라 한다) 이 선정되었을 때, 부문위원장은 해당 표준안을 작성하는 전문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 (A) 에 대해 「공업소유권에 대한 기본지침」을 주지함과 동시에, 검토항목에 관해 회원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의 유무에 대해 미리 조사를 의뢰한다.

A02 : 전문위원회에서 표준안이 거의 정해졌을 때 전문위원장은 해당전문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 (A) 에 대해 표준안에 관계되는 공업소유권등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공업소유권등에 관계되는 확인서를 부문위원회 개최 전전날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뢰한다.

※ 해당하는 회원은 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조기에 전문위원장에게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1 : 확인서 (★1)가 표준안 작성 완료까지 제출된 경우

A11 : 사무국은 제출된 확인서 (★1) 의 복사본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A12 : 사무국은 제출된 확인서 (★1) 의 복사본을 부문위원회에 제출한다.
부문위원회는 해당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를 한다.

A13 : 부문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사전설명회에서 제출된 확인서 (★1) 의 주요내용을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설명한다.

A-2 : 확인서 (★2)가 부문위원회 개최 전전일까지 제출된 경우

A21 : 사무국은 제출된 확인서 (★2) 의 복사본을 부문위원회에 제출한다.
부문위원회는 해당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를 한다.

A22 : 부문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사전설명회에서 제출된 확인서 (★2) 의 주요내용을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설명한다.

B. 표준안을 작성하는 전문위원회와 동일 부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전문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 (B) 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에 대하여

B01 : 부문위원회에서 검토항목이 선정되었을 때, 부문위원장은 해당 부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전문위원회에 참가하는 회원 (B) 에 대해 「공업소유권등에 대한 기본지침」을 주지함과 동시에 검토항목에 관해 회원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의 유무에 대해 미리조사하여, 가급적 빨리 그 결과를 전문위원장에게 보고할 것과 해당하는 공업소유권등에 관계되는 확인서를 사전설명회 개최 전전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뢰한다.

B-1 : 확인서 (★3) 이 표준안 작성완료까지 제출된 경우

B31 : 사무국은 제출된 확인서 (★3) 의 복사본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B32 : 사무국은 제출된 확인서 (★3) 의 복사본을 부문위원회에 제출한다.

B33 : 부문위원장은 사전설명회에서 제출된 확인서 (★3) 의 주요내용을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설명한다.

B-2 : 확인서 (★4)가 부문위원회 개최 전전일까지 제출된 경우

B41 : 사무국은 제출된 확인서 (★4) 의 복사본을 부문위원회에 제출한다.

B42 : 부문위원장은 사전설명회에서 제출된 확인서 (★4) 의 주요내용을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설명한다.

B-3. 확인서 (★4)가 사전설명회 개최 전전일까지 제출된 경우

B51 : 부문위원장은 사전설명회에서 제출된 확인서 (★5) 의 주요내용을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설명한다.

B52 : 전문위원회는 표준안에 대하여 확인서 (★5) 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B53 : 부문위원회는 의견, 대안을 포함하여, 표준안을 재검토한다.

지상중계

일본 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소개

(a) : 확인서의 조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표준안으로 재확인을 한다.

(b) : 확인서의 조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표준안의 추진을 중지할 것을 부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B54 : 부문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검토한 결과를 표준화회의 개최 안내와 함께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주지하며 표준화회의 전달까지 그에 대한 의견, 대안 제출을 접수받는다.

B55 :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표준화회의로 부의한다.

B-4. 확인서 (★6)가 사전설명회후 의견, 대안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경우

B61 : 사무국은 제출된 확인서 (★8)의 복사본을 해당 표준안을 작성하는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B62 : 전문위원회는 표준안에 대하여 확인서 (★6)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B63 : 부문위원회는 확인서 (★6)을 포함하여, 표준안의 재검토를 한다.

(a) 확인서 조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표준안으로 재확인한다.

(b) 확인서의 조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표준안의 추진을 중지할 것을 부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B64 : 부문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검토한 결과를 표준화회의 개최안내와 함께 표준화회의 위원에 주지하고, 표준화회의 전달까지 그에 대한 의견, 대안 제출을 접수받는다.

B65 : 부문위원장은 표준화회의에서 제출된 확인서 (★6)의 주요내용, 그에 대한 부문위원회의 대처 결과 및 표준화회의 전까지 의견, 대안의 제출현황등에 대하여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설명한다.

C. A, B 어느 전문위원회에도 참가하지 않는 회원 (C)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에 대하여

C71 : 사무국은 사전설명회에서 해당표준안의 결정에 관계되는 부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느 전문위원회에도 불참하는 회원 (C)에 대해 해당위원에게 표준안에 관계되는 공업소유권등에 대해 조사하여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해당 공업소유권등에 관계되는 확인서를 의견, 대안제출 마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뢰한다.

C-1. 확인서 (★7)가 사전설명회후 의견, 대안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경우

C71 : 사무국은 제출된 확인서 (★7)의 복사본을 해당 표준안을 작성하는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C72 : 전문위원회는 표준안에 대하여 확인서 (★7)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C73 : 부문위원회는 확인서 (★7)을 포함하여 재검토한다.

(a) 확인서의 조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표준안으로서 재확인을 한다.

(b) 확인서의 조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표준안의 추진을 중지할 것을 부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C74 : 부문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검토한 결과를 표준화회의 개최 안내와 함께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주지하여 표준화회의 전달까지 그에 대한 의견, 대안 제출을 접수받는다.

C75 : 부문위원회는 표준화회의에서 제출된 확인서 (★7)의 주요 내용, 그에 대한 부문위원회의 대처 결과 및 표준화회의 전달까지 의견, 대안 제출 현황등에 대하여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설명한다.

D. 비 회원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에 대하여

D01 : 표준작성까지의 각 과정에 있어서 해당 전문위원회 참가 회원은 표준안에 관하여 비회원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의 유무를 가능한한 조사한다. 또 비회원 소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다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① 사무국은 해당 비회원의 의지를 가능한한 빨리 확인한다. (문서)

(a) TTC의 기본지침에 찬성한다면, 해당 비회원에 대해 확인서의 제출을 의뢰한다.

(b) TTC의 기본지침에 반대한다면, 그 뜻을 부문위원회에 보고한다.

지상중계

일본 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소개

- ② 전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표준안을 재검토하며, 부문위원회는 ①의 (a), (b) 를 포함하여 표준안의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한다.
- ③ 부문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사전설명회 또는 표준화회의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주요내용을 표준화회의의 위원에게 설명한다.

(2) 신고가 없는 경우의 대처

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고를 안하는 경우에 대해 벌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TTC의 권리소유자가 공업소유권등에 관계되는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

단, TTC사무국은 철차적으로 아래에 명시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 확 인 시 점 | 대 상 자 | 실 시 사 항 |
|----------------------|------------------|---|
| 표준화회의 개최전 (표준작성전) | 신고를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 <p>해당회원의 의지를 확인한다.</p> <p>① 실시 허락에 관해 동의를 얻는 경우 표준화회의 개최에 있어서 확인서 제출을 의뢰한다. [표준화 회의에서 표결전에 표준안에 공업소유권이 관계됨을 표준화회의 위원에게 주지한다.]</p> <p>② 실시 허락에 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표준화회의 개최에 있어서 확인서의 제출을 의뢰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표준화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p> |
| 표준 작성후 | | <p>해당 회원의 의지를 확인한다.</p> <p>① 실시 허락에 관해 동의를 얻는 경우 (a) 무상 실시 허락의 동의를 얻는 경우 확인서 제출을 의뢰함과 동시에 표준화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게 주지한다. (b) 무상실시 허락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확인서의 제출을 의뢰하여 표준화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게 주지함과 동시에 회원 또는 비회원의 제의에 의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실시 허락에 관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확인서의 제출을 의뢰하고 표준화회의 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원에게 주지함과 동시에 회원 또는 비회원의 제의에 의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p> |

(3) 공업소유권의 조사

TTC 표준에 관계되는 공업소유권등의 유무 조사는 가능한한 해당전문위원회가 한다. (「조사위원회」등 새로운 조직은 만들지 않는다.)

(4) 비회원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등의 취급(표준 작성후에 확인된 경우)

TTC는 비회원이 소유하는 공업소유권의 취급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단, 회원 또는 비회원의 제안에 따라 표준의 폐지등에 대해 표준화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5) 신고 내용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의 처리

(a) 공개전의 해당 공업소유권등이 공개된 경우 해당 권리소유자는 공개후 신속하게 (「공업소유권등의 실시 권리에 관계되는 확인서」에 대해)의 해당 공업소유권등이 공개된 경우의 기재사항에 따라 확인서를 다시 제출한다.

(b) 신고 내용의 「허락하는데 있어서 대가등의 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

- 해당 권리소유자에 의한 신고 내용의 「허락하는데 있어서 대가등의 조건」변경에 있어서 TTC에서 표준화 활동의 원활한 진전 또는 작성된

TTC 표준의 보급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권리소유자는 변경이 생겼을때 신속하게 신고하며, 그 변경 내용에 대해 해당 부문위원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표준 보급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의 변경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표준화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c) 권리소유자에게 변동이 생긴 경우 (권리 소유권)

권리소유자에게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권리소유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사단법인 전신전화기술위원회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6) 지침위원회의 운영사항

(a) TTC 표준 작성의 과정에서 공업소유권등의 관여가 확인되어, 지침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지침위원회를 개최하며

- (1)항 「신고시기등의 규정」에 기타 경우의 취급을 명시한다.
- 각 경우에 대한 절차, 확인서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b) 기타, 기본지침(취급)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침위원회를 개최하며 그 경우의 취급을 명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